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건강정책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4년 1월 14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정원 22명(8급 10명, 9급 12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4. ~ 1.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0 제1호1)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3월 31일”을 “2024년 3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4)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1월 31일”을 “2023년 1월 31일”로 한다.

별표 10의2를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령 제61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4년 1월 14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

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기획담당관이 보좌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생 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 라 국립재활원의 평가대상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그 구 체적인 사항은 「책임운영기관 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 로 정한다.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보건복지부령 제614호 보건복지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14호 보건복지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 22년 1월 14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 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u><삭 제></u>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
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
는 사항은 홍보기획담당관이 보
좌한다.